

● 제32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3. 9. 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1170

I. 동의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3. 8. 14.
- 다. 회부일 : 2023. 8. 2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, 만15세 이상 보호대상아동,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립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시설임.
-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, 맞춤형 사례관리, 민간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적·안정적인 자립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

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
- (2) 위탁유형 : 시설위탁
- (3)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, 커뮤니티시설동
210호, 212호, 213호(한강로2가, 용산 베르디움프렌즈)
- (4) 규모 : 478.98m²(사무실, 상담실, 창고 등)
- (5) 위탁사무 내용
 -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진로·취학 등 지원
 -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
 -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
 - 지역사회 자원 발굴·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
 -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
 -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 -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지원
 -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
 - 그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
- (6) 위탁기간 : 5년(2024.1.1. ~ 2028.12.31.)
- (7)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'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(8)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
- 아동복지법 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)
- 아동복지법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자립지원전담기관)

- 위탁 필요성

- 자립준비청년에 대상 자립수준평가 등 사후관리,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, 민간자원 발굴·연계,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필요함.
- 아동복지시설 운영, 자립지원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아동·청년에 대한 기본 이해를 기반으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·단체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아동복지법 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○ 아동복지법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·운영,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자립지원전담기관)

-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(이하 "자립지원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(적정)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및 자립지원 전담기관 지정위탁 운영 종료('23.12.)예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운영을 신규로 민간 위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함) 제4조의3 제1항)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 -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 -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 -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 -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 - 그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

-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**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 <개정 2021.3.25, 2021.12.30>
-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, 2021.12.30>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9. 3. 28.>

- 그간 서울시 자립지원 관련 업무는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음.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 단위 사업별 사업수행(민간위탁)을, 202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확대 계획에 따라 시자립지원전담기관(지정위탁)을 운영하여 개인별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하여 왔음.
-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3년 1월에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을 설치하여 보호종료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.

<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추진 경위 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최초 위탁 (공개모집) | : '13.1.1. ~ '15.12.31. *시의회 동의 |
| - 수허가자 : | (사)서울시아동복지협회 |
| ○ 2차 위탁 (재계약) | : '16.1.1. ~ '17.12.31. |
| - 수허가자 : | (사)서울시아동복지협회 |
| ○ 3차 위탁 (재위탁 공개모집) | : '18.1.1. ~ '20.12.31. |
| - 수허가자 : | (사)서울시아동복지협회 |
| ○ 4차 위탁 (재계약) | : '21.1.1. ~ '23.12.31. *시의회 동의 |
| - 수허가자 : | (사)서울시아동복지협회 |

- '21.7.13. 보건복지부 「보호종료아동(자립준비청년) 지원강화 방안」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·도로 확대하고 통합관리를 강화함.
- 이에 서울특별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자체적으로 기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'20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' 등에 근거하여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분리하여 '22.10월부터 現 사업(아동자립지원사업단)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.

< 보건복지부 20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 >

□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조직 및 인력

- (조직) 자립지원전담기관은 1개 조직으로 운영하되, 시도별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으로 분리 운영 가능

□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정

- (기준)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진행 가능
- (계약기간) 계약일로부터 잔여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
- (지정방법) 적격심사로 진행

- 금번 동의안은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분리 운영 중인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업 및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< ‘아동자립지원사업단’과 ‘자립지원전담기관’ 통합운영(안) 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준 (분리운영) | <div style="margin-bottom: 10px;"> <h3>□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개요</h3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○ 수탁기관 : (사)서울시아동복지협회 ○ 운영방식 : 사무형 민간위탁 ○ 주요사무 : 자립지원정책 단위사업별 수행 및 사업기획 추진, 교육프로그램 개발,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홍보 중심 ○ 소 재 지 :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, 서울복지타운 702호 </div> <div> <h3>□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요</h3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○ 수탁기관 : (사)서울시아동복지협회 ○ 운영방식 : 자립지원전담기관 기운영 법인에 지정위탁 ○ 주요사무 : 자립준비청년 대상자 개인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중심 </div>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24길 124(아동복지센터 내) ○ 운영인력 (단위: 명, '23.3월말 기준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|--|---|----------|--|--|--|-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|---|---|
| | 아동자립지원사업단 | | | | | 자립지원전담기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계 | 단장 (겸직) | 사무국장 (겸직) | 팀장 | 과장 | 간사 | 관장 (비상근) | 사무국장 (비상근) | 팀장 | 직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3 | (1) | 1 | 2 | 2 | 2 | (1) | (1) | 3 | 13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변경 (통합운영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요(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○ 운영방식 : 시설형 민간위탁 ○ 주요사무 :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·후 자립지원 등 <u>자립지원 관련 종합적인 업무 전담</u> ○ 소재지 :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○ 운영인력 (단위: 명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계</th> <th colspan="4">자립지원전담기관</th> </tr> <tr> <th>기관장</th> <th>사무국장</th> <th>팀장</th> <th>직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2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4</td> <td>2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| | | | | | 계 | 자립지원전담기관 | | | | 기관장 | 사무국장 | 팀장 | 직원 | 32 | 1 | 1 | 4 |
| 계 | 자립지원전담기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기관장 | 사무국장 | 팀장 | 직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2 | 1 | 1 | 4 | 26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- 또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실을 포함하여 꿈나눔하우스 22개소(붙임1)의 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함에 따라 위탁유형을 사무형 위탁에서 시설형 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함.

| 사무형 위탁 | 시설형 위탁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행정재산(市 소유시설,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위탁 없이 사무만 위탁 | 행정재산(市 소유시설,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)의 관리위탁 수반 |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

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²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³⁾ 및 「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1항⁴⁾에서 보호대상아동⁵⁾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자립준비청년⁶⁾ 등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을 비롯하여,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까지 수행하는 등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.

-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3)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 - 1의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 - 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“자산형성지원”이라 한다)
 - 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 - 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 - 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4) 「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자립지원전담기관)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(이하 “자립지원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5)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4. “보호대상아동”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.
 - 6) 「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3.7.18>
 - 1. “자립준비청년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.

- 또한 「아동복지법」 제40조⁷⁾ 및 「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3항⁸⁾에서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위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⁹⁾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 -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적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,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3 종합 검토 의견

-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-
- 7) 「아동복지법」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·운영,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. 15., 2021. 12. 21.>
 - 8) 「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자립지원전담기관) 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9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 ② 삭제

- 다만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, 향후 집행기관은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붙임

자립준비청년 꿈나눔하우스 현황

(’23.7월말 기준)

| 연번 | 꿈나눔하우스 위치 | 운영시설 (법인) | 무상사용 계약기간 | 면적 (㎡) | 방수 | 현원 | 유형 | 매입시기 (준공)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|
| | 22개소 | | | | 64 | 40 | | |
| 1 | 강남구 개포동 1173-15 2층 202호 | 강남드림빌 (사회복지법인 그린힐) | '23.1.1.~ '25.12.31. | 58.92 | 3 | 2 | 여 | 2016 (2015) |
| 2 | 서대문구 북아현동 1-318외 1필지 신영빌라트 제201호 | 구세군서울후생원 (재단한국세군유지재단) | '23.1.1.~ '25.12.31. | 45.15 | 3 | 0 | 남 | 2015 (2011) |
| 3 | 관악구 봉천동 670-9 그랜드빌 제303호 ① | 동명아동복지센터 (사회복지법인 동명원) | '23.1.1.~ '25.12.31. | 50.14 | 3 | 3 | 남 | 2015 (2015) |
| 4 | 관악구 봉천동 670-9 그랜드빌 제203호 ② | | '23.1.1.~ '25.12.31. | 50.14 | 3 | 2 | 남 | 2015 (2015) |
| 5 | 강동구 길동 339-4 제501호 ① | 명진들꽃사랑마을 (사회복지법인 성암복지재단) | '23.1.1.~ '25.12.31. | 74.07 | 3 | 0 | 여 | 2015 (1996) |
| 6 | 강동구 암사동 501-4 암사동양텍스빌 803호 ② | | '23.1.1.~ '25.12.31. | 84.68 | 3 | 3 | 남 | 2016 (1999) |
| 7 | 은평구 신사동 34-6 새한(아) 404호 ① |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(재단법인 기쁨나눔) | '23.3.1.~ '25.12.31. | 82.95 | 3 | 2 | 남 | 2016 (2004) |
| 8 | 은평구 응암동 176 응암푸르지오(아) 제105동 제406호 ② | | '23.1.1.~ '25.12.31. | 59.58 | 3 | 3 | 남 | 2017 (2008) |
| 9 | 은평구 응암동 176 응암푸르지오(아) 제107동 제503호 ① |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(재단법인 기쁨나눔) | '23.1.1.~ '25.12.31. | 59.58 | 3 | 3 | 여 | 2015 (2008) |
| 10 | 은평구 응암동 176 응암푸르지오(아) 제107동 제104호 ② | | '23.1.1.~ '25.12.31. | 59.58 | 3 | 1 | 여 | 2017 (2008) |
| 11 | 구로구 오류동 346 오류동푸르지오 104동 404호 | 에델마을 (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) | '23.1.1.~ '25.12.31. | 61.25 | 3 | 3 | 여 | 2016 (2004) |
| 12 | 은평구 구산동 14-21 에덴드림(아) 제402호 ① | 은평천사원 (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) | '23.1.1.~ '25.12.31. | 84.84 | 3 | 2 | 남 | 2015 (2004) |
| 13 | 은평구 구산동 224 경남아너스빌 106동 1102호 ② | | '23.1.1.~ '25.12.31. | 84.99 | 3 | 3 | 여 | 2016 (2004) |
| 14 | 성동구 마장동 817 삼성아파트 102동 402호 ① | 이든아이빌 (사회복지법인 화성영아원) | '23.1.1.~ '25.12.31. | 84.93 | 3 | 0 | 여 | 2016 (1996) |
| 15 | 성북구 하월곡동 224 상그레빌(아) 104-1503호 ② | | '23.1.1.~ '25.12.31. | 79.98 | 3 | 2 | 남 | 2016 (2004) |
| 16 | 강서구 방화동 814 방화5단지(아) 제506동 제105호 ② | 자운보육원 (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집) | '23.1.1.~ '25.12.31. | 49.77 | 2 | 1 | 여 | 2015 (1994) |
| 17 | 강서구 방화동 814 방화5단지(아) 제505동 제403호 ① | | '23.1.1.~ '25.12.31. | 49.77 | 2 | 2 | 여 | 2016 (1994) |
| 18 | 동작구 대방동 393-49 잡종은맨션 1층101호 | 청운보육원 (사회복지법인 청운종합복지원) | '23.1.1.~ '25.12.31. | 84.83 | 3 | 3 | 남 | 2016 (2004) |
| 19 | 금천구 시흥동 1010 벽산(아) 110동 701호 | 혜명보육원 (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) | '23.1.1.~ '25.12.31. | 84.99 | 3 | 2 | 남 | 2016 (2000) |
| 20 | 은평구 신사동 342-35외 1필지 제501호 |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(재단법인 기쁨나눔) | '23.5.1.~ '25.12.31. | 65.94 | 3 | 3 | 남 | 2015 (2009) |
| 21 | 동대문구 장안동 410-13 센토빌아파트 제4층 제402호 | 보호연장아동 자립체험홈 운영 예정 | | 68.78 | 3 | - | 남 | 2015 (2004) |
| 22 | 서대문구 영천동 70-10 제201호 | | | 62.40 | 3 | - | 여 | 2015 (2002) |